#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예방 가이드

## - 주요 사례집 -

2026. 11




부산앵커센터

# CONTENTS

## 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및 주요 등록 사례

**1. 정부 재원별 주요 개념** ····· 3
1-1. 정부 재원별 개념 및 주요 특징 ····· 3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및 모니터링 절차** ····· 4
2-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 4
2-2.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절차 ····· 6
2-3. 국고보조금 비목별 주요 점검 기준 ····· 7

**3.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주요 등록 사례** ····· 10
3-1. 부정징후 패턴별 주요 등록 사례 ····· 10
3-2. 앵커사업 국고보조금 합동조사 부정징후 등록 사례 ····· 13

## Ⅱ. 기타 감사 지적 사례 및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RIS) 운영 실태 점검 적발 사례** ····· 19
1-1.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RIS) 운영 실태 점검 배경 ····· 19
1-2. 주요 지적 사례 ····· 20
1-3. RIS 운영실태 점검 상세 내용 ····· 23

**2. 기타 감사사례 및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 26
2-1. 기타 감사(중앙부처 등) 지적 사례 ····· 26
2-2. 조달청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 29

## Ⅲ. 국고보조금 불인정 및 부정수급 예방 가이드

**1.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원칙** ····· 41
1-1.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 41
1-2.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과정별 착안 사항 ····· 42

**2.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점검사항** ····· 44
2-1. 국고보조금 집행 항목별 점검 사항 ····· 44

# I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및 주요 등록 사례

1. 정부 재원별 주요 개념
1-1. 정부 재원별 개념 및 주요 특징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및 모니터링 절차
2-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2-2.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절차
2-3. 국고보조금 비목별 주요 점검 기준

3.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주요 등록 사례
3-1. 부정징후 패턴별 주요 등록 사례
3-2. 앵커사업 국고보조금 합동조사 부정징후 등록 사례

# 1. 정부 재원별 주요 개념

## 1-1 정부 재원별 개념 및 주요 특징

- 출연금·보조금은 지원 목적, 법적 근거 및 예산 비목에 따른 재정지원 유형 구분됨
- 앵커 체계 내 운영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분류하며, 앵커 지침은 집행 모니터링 강조

### 각 재원은 목적, 지원대상 및 예산 비목 등으로 구분

- 출연금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에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며, 주로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출연금·연구개발출연금 등의 형태로 지원
-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등의 형태로 지원
- 위탁사업비는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원

| 구분 | 출연금 | 보조금 | 위탁사업비 |
|---|---|---|---|
| 개념 | •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대항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근거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지급 | • 국가가 지자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 | •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 |
| 법적근거 |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 지원대상 | • 정부출연기관 | • 지방자치단체, 민간 | • 법인·단체 또는 기관 |
| 비목 | •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 민간위탁사업비 |

### 앵커 체계 내 사업(앵커, 글로컬, COSS 등)은 지방보조금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분류되며, 수행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운영

- 해당 사업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내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방식으로 교부·운영
- 교육부 →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역앵커센터 → 수행대학 순으로 교부하며, 앵커사업 지침에 따라 수행대학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월 1회 집행 점검 실시

#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및 모니터링 절차

## 2-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법령 위반 등을 포함하며, 고의성이 없는 과오수급도 해당
- 부정수급 발생 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반환·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 제재처분 적용 가능

###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지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사항 |
|---|
|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br>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br>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br>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br>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br><br>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br>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br>2. 법령을 위반한 경우<br>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br><br>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br>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br>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br>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조항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을 할 경우, 위반행위는 제재 처분이 필요
- 다만, 법령 위반의 교부취소 및 반환 사유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수행한 ‘과오수급’ 역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 사업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자 (상피조건) | 기타 제한조건 |
|---|---|
|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br>•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br>•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의심사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br>• e나라도움상 점검결과 등록시에는 구별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조금법상에는 부정수급에 포함되는 개념 |

## 국고보조금 제재 처분의 종류

| 번호 | 구분 | 설명 |
|---|---|---|
| 1 |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 • (취소대상) ①목적외 사용, ②법령, 교부 조건,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br>• (반환대상) 교부 결정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br>※ 보조금법 제19조, 제30~32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4~45조 |
| 2 | **보조금 환수** | • (환수대상)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br>※ 보조금법 제33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 |
| 3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 • (부과대상) 환수 대상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br>※ 보조금법 제33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 제44~45조 |
| 4 | **강제징수** | • (징수대상) 미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br>※ 보조금법 제33조의3 |
| 5 | **수행배제** | • (배제대상) ①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1회 이상), ② 목적외 사용(2회 이상), ③ 법령, 교부 조건,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위반, 보조금 지급 요건 미충족(3회 이상)<br>※ 보조금법 제31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제44~45조 |
| 6 | **명단공표** | • 공표대상) ① 공시지연 시점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② 수행배제 보조사업자, ③ 교부제한 보조금수령자<br>※ 보조금법 제36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 |

**※ 관련 법과 지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부정수급, 과오수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사업자는 해당 법과 지침을 반드시 숙지 필요**

## 2-2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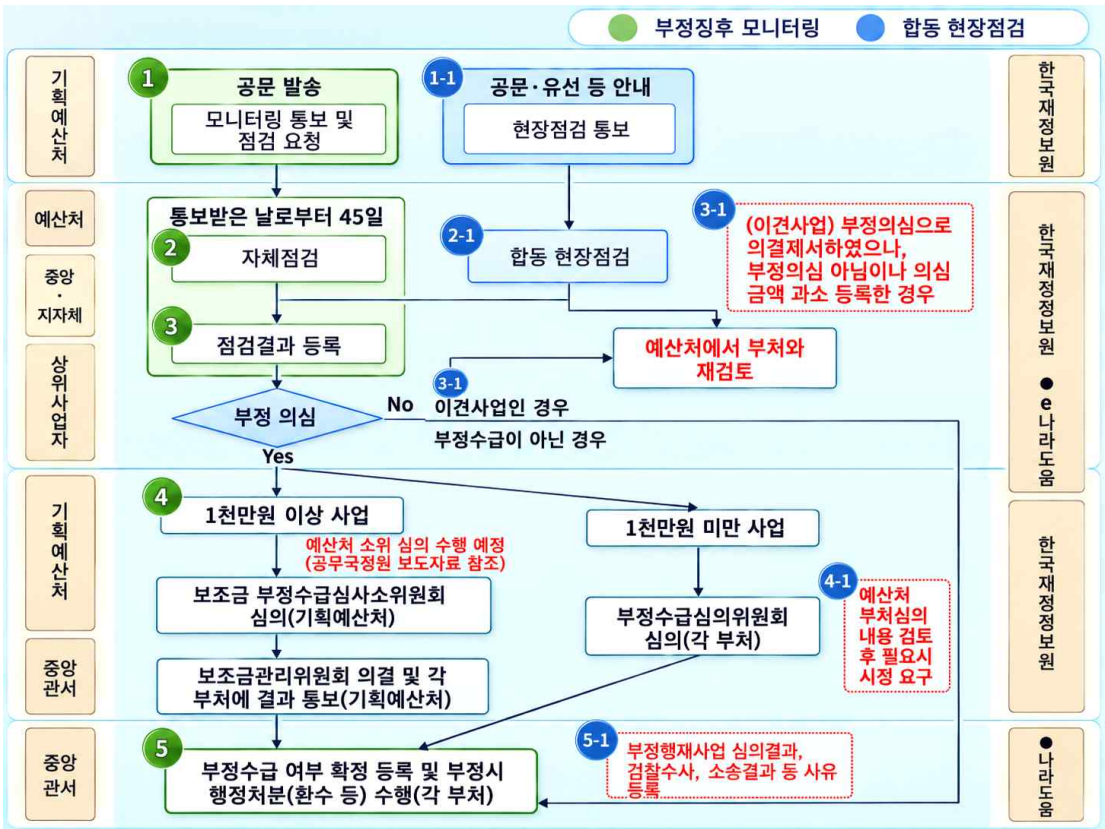
- 1차 부정징후 패턴 탐지부터 현장점검 결과까지 모든 점검 절차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
- 부정징후는 8개 탐지 패턴으로 분류하되, 현장점검 시 탐지 내역뿐만 아니라 사업비 집행 전반 점검

### 특정거래 관리 등 8가지 탐지 패턴으로 보조사업자에 통보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징후 탐지 패턴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패턴뿐만 아니라 사업비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

| 부정징후 탐지 패턴 유형 | | | |
|---|---|---|---|
| 가족간 거래 | 급여성 경비 | 지출 증빙 미비 | 집행 오남용 |
| 특정거래 관리 | 자산 관리 | 기타 사업관리 | 통계모델 유형 |

###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절차는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진행




- ① 모니터링 후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 → ② 의심사업 점검 → ③ 점검결과 등록 (통보일 기준 45일 이내, 이견시 재검토) → ④ 부정수급 심의 예정*(예산처·각 부처) → ⑤ 부정수급 여부 확정 등록

## 2-3 국고보조금 비목별 주요 점검 기준

- 허위·중복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 및 공휴일·심야시간 카드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여부 중점 점검
-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수의계약 기준 준수 및 계약 체결 절차 등 기준 이행 적정성 점검

### (보조금 카드 사용 관련)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한 경우, 공휴일 및 심야시간 등 업무시간 외 사용 내역의 적정성 판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세부 명시

### (인건비) 참여인력에 대한 사업수행 현황 및 근태관리,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

- 특정 참여인력에게 성과급이 다른 참여인력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내부 또는 상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
-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여인력에 포함된 경우, 근로계약서 및 해당 인력의 실제 경력 등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점검
- 허위인력 또는 이중취업자 등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자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일자와 비교하여 근태관리 현황 점검
- 보조사업 목적 외 사유로 국외 출국한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 확인
- 해당 보조사업의 참여기간 외에 인건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별 인력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지 확인

### (운영비)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등의 과다 집행 여부 및 재료비를 통한 물품 구매의 오남용 여부 점검

- 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e나라도움에 반드시 등록
-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계약 체결 여부 점검
- 일반용역비는 행사 운영, 채용, 영상 제작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

### (여비) 집행 상세 내역 및 산정 근거(공무원 여비 기준 등)의 적정성 점검

- 보조사업자의 내부 여비 지급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상위 보조사업자의 여비 규정 적용 여부 점검

###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외빈 초청 접대비, 연회비 및 체육대회·종무식 등 사업추진비목의 집행이 공식적인 업무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점검

- 기관업무 비목의 경우,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 가능하며 목적 외(주류, 과도한 회의비 등) 집행 점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240목)**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되, 전통주(전통주산업진흥법) 구매를 우선 고려한다.

### (계약) 계약 체결 및 집행 과정에서 선금 지급, 수의계약 절차, 계약상대자 등의 적정성 점검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공사·제조·용역계약의 선금 지급기준 준수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확인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동일한 간접보조사업자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자 참여인력의 참여율 점검
- 계약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계약절차 우회 및 계약상대자의 사적 이해관계 해당 여부 점검
- 2천만원 초과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전 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1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과오수급으로 처리하여 환수 필요

-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2개 이상 업체의 사전 견적 확보 여부 확인*

* 견적업체의 휴업 및 폐업 사항도 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관련 계약 내용**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생략)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21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내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다빈도 계약인 5호 가.만 발췌(이외 관련 규정 참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주요 등록 사례

## 3-1 부정징후 패턴별 주요 등록 사례

- 가족 간 거래 및 중요재산 무단처분 등 부정수급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 시 유의
- 부적정 수의계약 및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불인정환수 사례 확인으로 계약절차 및 집행기준 준수

### (사례 구성) 가족 간 거래, 자산 관리, 급여성 경비, 지출증빙 미비 및 집행 오·남용, 특정거래 관리 등 주요 유형별 사례 공유

- 수행대학은 사례별 부적정 집행 사유와 불인정·환수 등 조치 결과를 참고하여, 유사한 부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 시 유의
-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은 실제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이므로 집행 유의

### 가족 간 거래

가족 간 거래는 14개 부처·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부)의 보조금 관련 행정규칙 상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100% 환수를 기본으로 함

| 번호 | 주요 내용 |
|---|---|
| 1 | **보조사업 가족 인건비 집행**<br>• A기업 대표자 ㅇㅇㅇ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배우자에게 10개월간 매달 인건비를 지급함. 인건비 집행 건에 대해 현장점검 시 배우자의 근태기록, 근무기록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집행 건에 대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 후 전액 불인정 처리 |
| 2 | **보조사업 가족 사업체와의 거래**<br>• 해당 보조사업의 소관부처는 가족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의 대표자 ㅇㅇㅇ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고 자신도 이사로 있는 B, C기업에 수차례 용역들을 주어 합계 약 2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을 진행 |

### 자산 관리

국고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3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 고려 필요

| 번호 | 주요 내용 |
|---|---|
| 1 | **중요재산 무단양도**<br>• 대표자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하여 4,900만원을 취득한 바, 해당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등록하고 환수 결정 |

## 급여성 경비

A기업 대표자 ㅇㅇㅇ씨는 △△△씨를 동일 기간에 두 사업(e나라도움 보조사업,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인건비 1,200만원을 수령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씨의 인력 참여율이 100%를 초과(학생인건비 한정 연평균 130%)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위반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적발 환수 및 잔여 사업기간 참여 배제됨

| 번호 | 주요 내용 |
|---|---|
| 1 | **이중 취업자 인건비 지급**<br>• A기업 대표자 ㅇㅇㅇ씨는 △△△씨를 동일 기간에 두 사업(e나라도움 보조사업,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인건비 1,200만원을 수령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씨의 인력 참여율이 100%를 초과(학생인건비 한정 연평균 130%)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위반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적발 환수 및 잔여 사업기간 참여 배제 |
| 2 |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br>• B기업 대표자 □□□씨는 퇴사자 △△△씨의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한 인건비 8백만원 및 사업계획서 상 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인력인 ◎◎◎에 대하여 인건비 1,500만원을 수령하였음. 해당 인력에 대한 실제 적정 근무 여부 확인이 불가능 한 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결정함 |

## 지출 증빙 미비 및 집행 오·남용

지출 증빙 미비와 관련한 부정수급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 등을 근거로 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출 증빙 및 내역이 갖춰지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한 100% 환수가 고려됨

| 번호 | 주요 내용 |
|---|---|
| 1 | **지출 증빙 미비**<br>• A기업 대표자 ㅇㅇㅇ씨는 전문가 자문 비용 집행 관련 증빙 미비(자문 내역, 자문비 지급 확인서 미첨부 등) 금액 5백만원 및 회의비 집행 관련 증빙 미비(인원수가 상이한 회의록, 결제 내역 첨부 등) 금액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사용한 바, 해당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처리 |
| 2 |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br>• 바우처 발급 대상자인 △△△씨의 사망 이후 자녀 ○○○씨가 해당 바우처카드 11만원을 사용하였음. 자녀 ○○○씨는 사망자 카드 사용 제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나, 사망자의 카드를 대리사용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 처리 |

## 특정거래(수의계약)

수의계약 등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업 규정이 사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의 위반 여부 등이 없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전체 계약 금액 100%에 대하여 부정수급 등록이 고려됨

| 번호 | 주요 내용 |
|---|---|
| 1 |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 |
| | • A보조사업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업체로부터만 견적을 받고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함.「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나, 관성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최종적으로 과오수급 결정 |
| 2 | **상위보조사업자 사전 승인 없는 수의계약 체결** |
| | • A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이전부터 거래했던 B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나라장터 입찰 과정과 상위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A보조사업자는 B업체를 이전부터 거래하던 업체라고 설명하였음.<br>• 그러나, 해당 사유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오수급으로 결정 |
| 3 | **수의계약을 통한 목적 외 사용** |
| | • A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상 재료비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을 재료비 구매에 사용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을 통해 자산 성격의 장비를 구매하였음. 이는 목적 외 사용이며, 추가적으로 상위 보조사업의 사업관리지침 상 불인정처리 사유(자산성 장비 구매 불가)에 해당하여 약 7천만원 규모의 해당 집행 건에 대해 과오수급으로 처리하고 반납(환수) 처리를 진행 |

## 특정거래(신생기업 거래)

신생기업과의 거래가 즉각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는 아니나, 신생기업과의 거래는 페이퍼컴퍼니, 즉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존재. 이런 경우 보조사업자가 유착관계에 있는 자에게 계약을 몰아주어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신생기업 간의 거래는 특별한 주의 필요함

| 번호 | 주요 내용 |
|---|---|
| 1 | **신생기업과의 허위 거래** |
| | • A기업 대표자 ○○○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B사를 설립한 뒤, 이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수령하였음. □□법원은「보조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4,300만원의 배상을 명령 |
| 2 | **지인이 설립한 신생기업과의 부적정 거래** |
| | • A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이전부터 거래했던 B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나라장터 입찰 과정과 상위보조사업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A보조사업자는 B업체를 이전부터 거래하던 업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당 사유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오수급으로 결정 |
| 3 | **수의계약을 통한 목적 외 사용** |
| | • A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상 재료비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을 재료비 구매에 사용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을 통해 자산 성격의 장비를 구매하였음. 이는 목적 외 사용이며, 추가적으로 상위 보조사업의 사업관리지침 상 불인정처리 사유(자산성 장비 구매 불가)에 해당하여 약 7천만원 규모의 해당 집행 건에 대해 과오수급으로 처리하고 반납(환수) 처리를 진행 |

## 3-2 앵커사업 국고보조금 합동조사 부정징후 등록 사례

신생 업체 및 특수관계자와 반복 수의계약 및 형식적 경쟁입찰 등 특혜 소지가 있는 계약 유의
분할계약, 수의계약 사유 미충족 등 유사 집행 지적 사례 방지를 위해 계약 절차 준수 필요

### (사례 개요) 앵커사업 국고보조금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부정수급 의심사례 공유

- 전국 앵커사업 국고보조금 합동조사에서 등록된 주요 사업비 집행 지적사례를 공통 유형별로 분류·정리하여 공유
- 해당 지적 사례는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최종 등록되어 부처 간 협의 및 소위원회 상정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사례는 아님
- 수행대학은 사례별 부적정 집행 등록 사유를 참고하여 유사 사례 발생 예방하며, 부정사례 발생 빈도가 높은 계약 분야는 계약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특정거래 의심사례 (계약 관련)

| 번호 | 주요내용 |
|---|---|
| 1 | **신생거래 업체와 수의계약**<br>• '25년도 앵커사업 시작 이후 신생업체('25년 설립)와 행사 운영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행사 수행 이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됨<br>•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행역량 및 객관적 선정기준보다 대학 내부자와 업체 대표와의 기존 관계를 통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어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됨 |
| 2 | **신생거래 업체와 수의계약**<br>• 신생업체와 복수의 행사 운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확인하였으나, 행사 진행은 서로 다른 단위과제에서 별도의 행사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됨<br>• 다만,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신생 업체임에도 업체의 행사 수행역량 및 선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는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됨 |
| 3 | **신생거래 업체와 수의계약**<br>• 신생업체와 행사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정산서류 검토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됨<br>• 이에 용역업체의 프로그램 수행 관련 이체확인증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세부 집행내역을 재검토하였으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음<br>• 담당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아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됨 |
| 4 | **독점성 없는 수의계약**<br>• 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대해 특정 업체와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진행<br>• 그러나 독점적 특허권·저작권·기술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업체도 동일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br>• 이에 따라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정 계약으로 판단하여 의심사례로 등록 |

| | |
|---|---|
| 5 | **특수관계 업체 간 분할 수의계약**<br>• 동일한 용역을 B업체와 C업체에 각각 나누어 계약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두 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사이에 특수관계가 확인됨<br>• 단일 과업을 수의계약 한도 내로 분할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하고 특수관계 업체에 일감을 배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등록 |
| 6 | **비교견적 없는 수의계약 체결**<br>• 보조사업자는 재료비·연구개발비·유형자산 취득 등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수천만 원대 거래 진행<br>• 내부 심의 기준인 재료비 300만 원, 기자재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나누어 심의 및 경쟁입찰 요건을 회피한 정황이 의심<br>•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 예외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교견적서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7 | **특수관계 업체 간 형식적 경쟁입찰**<br>• 4,480만 원 및 2억 6,500만 원 규모의 계약 2건에 대해 A업체와 B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두 건 모두 A업체가 낙찰됨.<br>•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양 업체의 대표자가 서로 상대 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확인<br>•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적정 계약으로 판단 후 부정징후 의심사례로 등록됨 |
| 8 | **특수관계 업체 간 형식적 경쟁입찰**<br>• B업체와 C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됨<br>• 특수관계가 확인되었고, 해당 입찰은 실질적 경쟁이 없는 형식적 절차로 판단되어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9 | **수의계약 사유 미충족 및 절차 부적정**<br>• 업체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3천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내부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소명함<br>•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적격성에 하자가 확인되었으며, 취득 자산도 특정 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독점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수의계약 사유 부족으로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10 | **특허 독점성 미확인 수의계약**<br>• 특정 업체의 특허 보유를 이유로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특허만으로 특정 업체의 독점적 수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br>• 다른 업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경쟁 절차를 생략한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기타) 특정거래 및 급여성 경비 의심사례

| 번호 | 주요내용 |
|---|---|
| 1 | **입찰공고 기간 단축 및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br>• 자산 취득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공고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뒤 직찰 방식으로 계약 진행<br>• 내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적격성에도 문제가 확인되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회피한 부적정 계약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2 | **동일 설비 관련 장비 분할 구매**<br>• 동일 설비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장비들을 각각 별도 계약으로 구매<br>• 개별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였으나 전체 구매금액을 합산하면 경쟁입찰 대상에 해당됨을 확인<br>• 계약금액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 구매로 판단되어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3 | **동일 주소 업체 간 분할계약**<br>• 동일 과업을 B업체와 C업체에 나누어 계약했으며, 확인 결과 두 업체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br>• 동일 업체 또는 특수관계 업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쟁입찰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계약 정황이 의심되어 부정수급 사례로 등록 |
| 4 | **비교견적서 누락 구매**<br>• A기관은 행사 운영 용역 계약에서 작성일자가 누락된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고 식비 집행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비 사용<br>• 계획상 참여인원, 실제 정산인원, 보험가입 인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최종 결과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음<br>• 지출 증빙과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집행·정산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5 | **기술 평가위원 수 기준 미달**<br>•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위원 수가 문서에 제시된 기준인 1억 원 미만 5명, 1억 원 이상 7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br>•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정 계약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6 | **사업 기여도 평가 없는 보직자 인센티브 지급**<br>•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 참여 여부와 수행 역할이 불명확한 총장·부총장·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일괄 지급함<br>• 지급 대상자인 총장이 내부 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였고, 실제 사업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 평가 없이 직급순으로 수당을 배분한 정황 확인<br>• 인센티브 지급 심의의 독립성과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등록 |

# Ⅱ

# 기타 감사 지적 사례 및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1.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RIS) 운영 실태 점검 적발 사례
1-1.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RIS) 운영 실태 점검 배경
1-2. 주요 지적 사례
1-3. RIS 운영실태 점검 상세 내용

2. 기타 감사사례 및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2-1. 기타 감사(중앙부처 등) 지적 사례
2-2. 조달청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 1.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RIS) 운영 실태 점검 적발 사례

## 1-1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RIS) 운영 실태 점검 배경

RIS 운영실태 점검에서 연구비 집행뿐 아니라 계약·예산·성과관리 전반의 부적정 사례 확인
허위 거래, 및 구매와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고의적 편취는 환수 및 수사 의뢰 진행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의 확대·개편 이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의 합동점검을 실시**

- 위법·부적정 집행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앵커(구 RISE)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점검 실시

**사업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개 플랫폼 대상으로, 산·학 협력과제, 입찰·계약 절차 준수, 예산관리 및 성과관리 등 4개 분야 실태 점검 실시**

- 울산·경남('20~'24년), 충북('20~'24년), 전북('23~'24년) 등 3개 플랫폼의 총사업비 5,244억 원에 대한 집행 현황 점검 완료
-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교수)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집행 적정성 점검
- 사업단(대학)이 각 플랫폼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 관리 적정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
- 산·학 협업 연구 등 대학과 기업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성과평가 적정 여부, 성과물 활용 적정 여부 점검

**고의성이 높은 연구비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추진 및 수사 의뢰**

-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금액 4,533만원 환수 추진 및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 배분 차등 확대 등 관리체계 개선 예정
- e나라도움을 활용한 중복수급 예방 및 불성실 연구이력 확인 강화, 해당 연구자의 과제 참여 제한 및 페널티 부여 등 관리 강화 추진
- 입찰담합 의심 사례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적정 계약 관련 3,145만원 환수 추진 및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예정

## 1-2 주요 지적 사례

**(연구비 편취) 연구재료를 허위로 구매한 것처럼 증빙을 작성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구매대금 페이백,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사적 물품 구매 등 부정집행 적발**

- 학회 참석 등 국외출장 과정에서 개인 일정으로 출장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 적발 사례

| 번호 | 주요내용 |
|---|---|
| 1 | **허위 재료비 지급을 통한 편취** |
| | • A社는 수입한 자율주행 농기계를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래처에 부품을 개별 구매하는 것으로 꾸며 허위 재료비 지급(1.95억원) |
| 2 | **허위 재료비 지급을 통한 편취** |
| | • B社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구매단가를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책정하여 거래처에 허위 재료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돌려받아 편취(1.56억원) |
| 3 | **사적 물품 구매** |
| | • E교수는 지역 마트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누적된 금액을 '적립금'처럼 이용, 연구 종료 후에도 집행제한 품목인 주류를 포함한 생활물품으로 교환(1.16억원) |
| 4 | **사적 물품 구매** |
| | • 민간기업 F연구원은 회사 인근 사무용품점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아이폰 12대, 갤럭시폰 5대, 상품권(70만원) 등 환금성 높은 물품과 게임기 등으로 교환(0.74억원) |
| 5 | **방만한 연구비 집행** |
| | • G교수는 학회 참석차 해외출장을 가면서 개인 일정을 위해 학회 개최지에서 약 3,000km 떨어진 도시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외 도시 간 항공권도 연구비로 구매(685만원) |
| 6 | **방만한 연구비 집행** |
| | • H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연구비 집행 권한을 참여기업에 전면 일임하였고, 참여기업은 연구비로 사업과 무관한 수익 목적의 시제품 제작(3,980만원) |

### (입찰 및 계약 부적정) 특수관계 업체 간 반복 입찰 및 들러리 입찰 등 담합 의심 사례 및 입찰금액과 다른 계약 체결 및 지체상금 미부과 등 부적정 계약 적발

- 또한, 경쟁입찰 회피를 위한 분할 수의계약, 계약 관련 증빙 미비 등 계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227건(321.7억원) 적발

- 적발 사례

| 번호 | 주요내용 |
|---|---|
| 1 | **담합 의심 사례** |
| | • 민간업체 I, J, K는 대표자가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서, 37건의 입찰에 대해 둘씩 짝지어 입찰하면서 번갈아 계약 체결(14.71억원) |
| 2 |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
| | • 입찰에서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1.23억원) |
| 3 |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
| | • 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 체결하거나, 제안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 체결(0.54억원) |
| 4 |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
| | • 공사량 증감이나 물가변동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1.66억원, 증액한 금액 633만원) |
| 5 |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
| | • 납품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페널티 면제(8.74억원, 면제된 지체상금 2,512만원) |
| 6 |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
| | •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를 초과하는 계약을 분할하여 같은 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0.22억원) |
| 7 |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
| | • 독점공급업체임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증빙 미첨부(1.91억원) |

### (예산관리 부적정) 잔여 사업비 소진을 위한 불필요한 물품 대량 구매 등 무리한 집행, 도서관 리모델링 및 고가 기념품 구매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사례 적발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필수서류 누락, 교수 서명 대필 등 사례 적발
- 적발 사례

| 번호 | 주요내용 |
|---|---|
| 1 | **사업비 소진성 집행** |
| | • N기관은 수행과제를 모두 완료하고도 남은 잔여 사업비를 소진할 목적으로 프린터 토너, A4 용지 등 물품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구매(0.99억원) |
| 2 | **사업비 소진성 집행** |
| | • O사업단은 사업비 총 49억원 중 회계마감일 하루에만 33.8억원(69%)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일부 지출 건은 서류 미비로 미집행된 사례도 발생 |
| 3 | **사업비 소진성 집행** |
| | • 도서관 리모델링, 홍보 전광판 설치, 고가 기념품 구매 등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실상 대학교 예산 보조로 활용한 사례 58건(14.6억원) |
| 4 | **사업비 소진성 집행** |
| | •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필수서류 누락, 학생의 교수서명 대필 등 집행 부실 관리 사례 33건(0.6억원)을 적발 |

### (성과관리 부적정) 타 연구사업의 성과물을 RIS 연구실적으로 중복 제출하거나, 기존 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하는 등 연구성과 검증 부적정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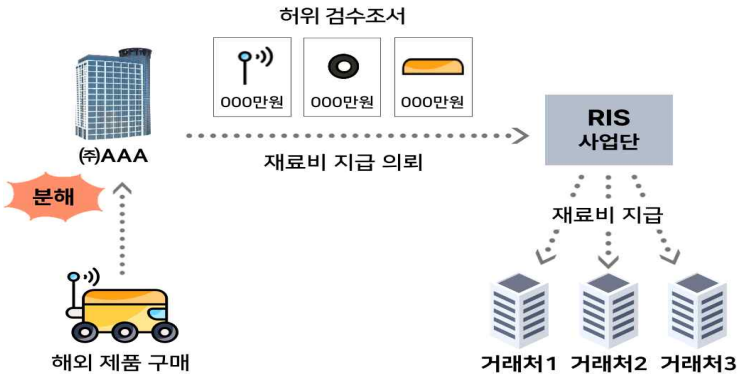
- 동일 연구성과물을 서로 다른 과제에 중복 제출 및 예산 중복 반영 등 관리 부적정 사례 적발
- 적발 사례

| 번호 | 주요내용 |
|---|---|
| 1 | **과제 예산 중복 반영** |
| | • R교수는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식재료가 불필요한 과제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로 다른 과제에서 동일한 성과물(밀키트 개발)을 중복 제출(3,928만원) |
| 2 | **결과 보고서 중복 제출 ①** |
| | • P社는 전년도 완료과제의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진하자, 전년도 완료과제 결과보고서를 편집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증하지 않음 |
| 3 | **결과 보고서 중복 제출 ②** |
| | • Q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을 RIS 연구과제 수행실적에도 포함하여 제출 |
| 4 | **성과물 부실 관리 ①** |
| | • S강사는 동영상 강의 제작을 위해 가족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결과물(동영상)은 PPT에 음성을 입힌 조악한 수준으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활용조차 하지 않고 방치 |
| 5 | **성과물 부실 관리 ②** |
| | • T교수는 사업비 8억원 규모의 교육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보고서에는 구체적 사업성과 없이 교육 횟수만을 단순히 기재하고 있으며, 분량도 3장에 불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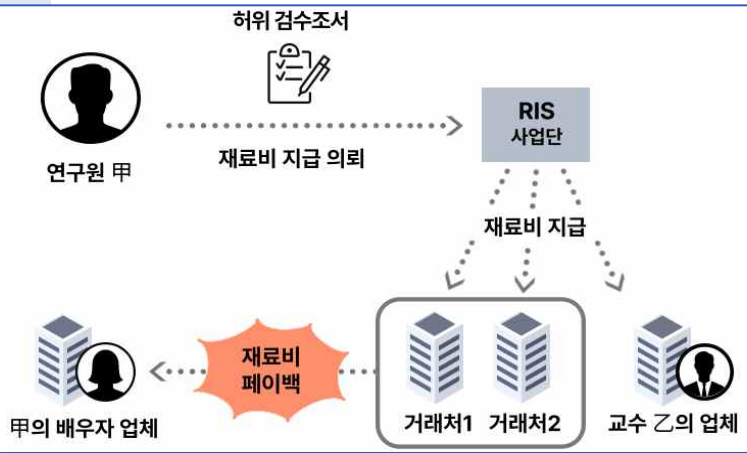
## 1-3 RIS 운영실태 점검 상세 내용

**RIS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부적정 집행을 예방과 사업비 집행·관리의 적정성 확보에 각별한 유의 필요**

###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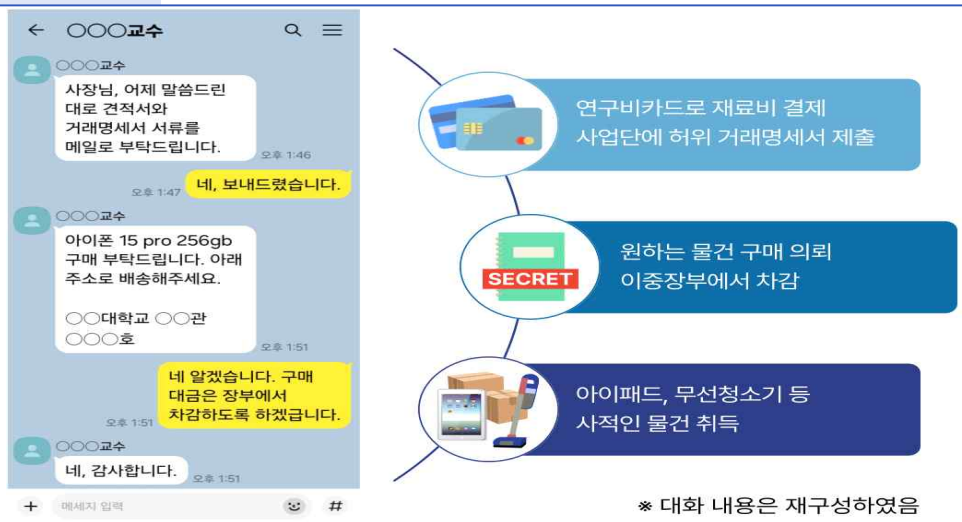
| | |
|---|---|
| **재료비 허위 지급** | <br>• T민간기업 ㈜AAA은 「○○용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br>• 해외에서 수입해온 자율주행 기기를 마치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하고, 이를 분해하여 각각의 부품을 따로 제작 및 구매하는 것처럼 꾸밈<br>•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거래처 24곳에 허위 재료비를 지급하는 등 총 1억 9,510만원의 재료비를 편취 |
| **조치사항** | • 수사의뢰 예정 |

###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②

| | |
|---|---|
| **재료비 구매 페이백** | <br>• 민간기업 연구원 甲은 「○○용 의료기기 개발」 과제 수행<br>•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거래처 12곳으로부터 연구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재료비를 지급<br>• 명의의 업체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해당 금액을 전액 돌려받음<br>• 이 밖에도 공동 연구자인 대학교수 乙 명의의 업체로부터 연구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하여 허위 재료비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5,608만원의 재료비 편취 |
| **조치사항** | • 수사의뢰 예정 |

##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③

**사무용품 허위 지출 및 개인 취득**




※ 대화 내용은 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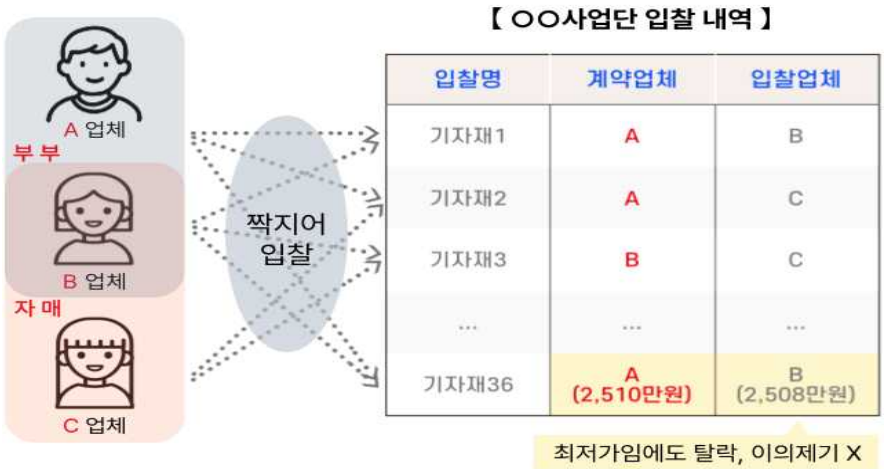
- C대학 丙교수는 교내에 입점한 컴퓨터용품점에서 연구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지출
- 아이폰, 아이패드, 무선청소기, 발마사지기 등 개인용품 구매를 의뢰하여 연구실 등의 장소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총 3,650만원의 재료비 편취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

##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④

**특수관계자를 통한 계약 행위**




【 ○○사업단 입찰 내역 】

| 입찰명 | 계약업체 | 입찰업체 |
|---|---|---|
| 기자재1 | A | B |
| 기자재2 | A | C |
| 기자재3 | B | C |
| … | … | … |
| 기자재36 | A (2,510만원) | B (2,508만원) |

최저가임에도 탈락, 이의제기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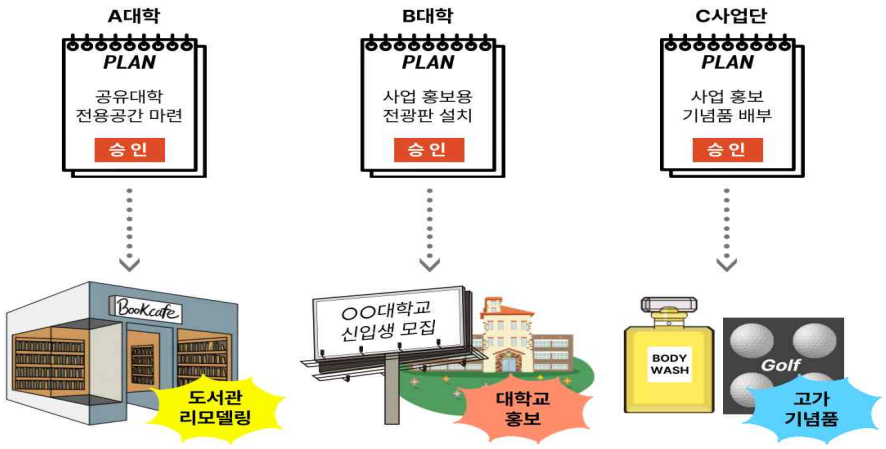
- 민간업체인 A, B, C는 총 37건(계약금액 총 14억 7,099만원)의 공개 입찰에서 둘씩 짝지어 입찰 참여와 번갈아 낙찰받아 계약 체결 이전부터 거래
-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A의 대표가 B의 입찰 대리인이자 C의 사내이사로 등재
- 서로 동일한 서식과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일한 팩스번호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추정
- 계약 담당자의 착오로 최저가 입찰자(B)가 아닌 차순위 입찰자(A)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담합 정황 포착으로 담합 의심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

###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⑤

**사업과 무관한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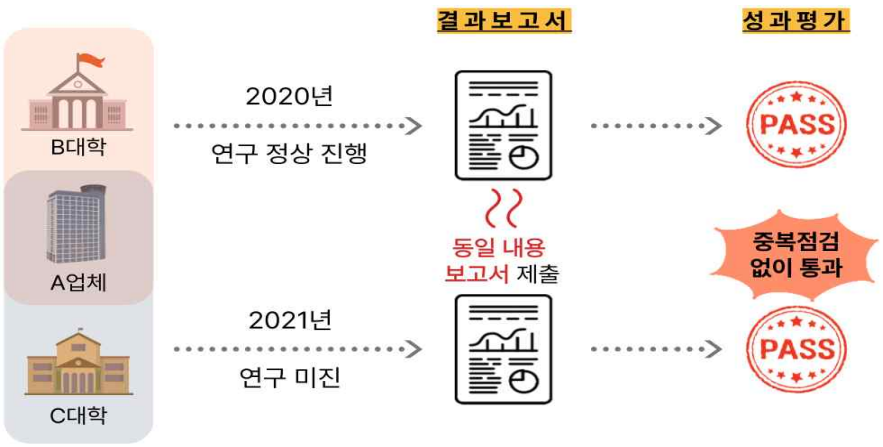

- A대학교는 RIS 사업비를 이용하여 동 사업과 무관한 일반학생들이 이용하는 개방형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도서관 리모델링에 사용
- B대학교는 RIS 사업 홍보 목적으로 교문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학교 홍보에 사용
- C사업단은 RIS 사업 홍보를 명목으로 골프공 세트(4구 15,800원), 바디워시(100ml 38,000원) 등 고가의 기념품을 대량 구매하고, 관리대장 미작성

**조치사항**

-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및 제도개선 예정

###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⑥

**전년도 결과보고서 재제출**




- 민간기업 A는 2020년 B대학과 OO용 유효변수 추출 과제를 완료
- 2021년에는 C대학과 해당 기술에 대한 고도화 과제를 수행
- 연구 진행이 미진하자 2020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성과평가 과정에서 기존 결과보고서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심사 통과

**조치사항**

- 제도개선 예정

# 2. 기타 감사사례 및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 2-1 기타 감사(중앙부처 등) 지적 사례

- 수의계약 기준 및 계약 지체상금 적용 등 주요 절차 준수와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 국외출장의 목적 적합성 및 결과보고(여비 정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집행 관리 철저 요구

**부산형 앵커 사업 수행대학의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전 예방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타 사업의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참고자료로 발췌·공유**

-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국고보조사업 감사 결과와 기관별 특정감사 결과 중 계약, 국외출장 등 주요 항목 집행에 관한 지적 사례 선정
- 감사 지적사례를 부산형 앵커 수행대학에 공유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비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세부 내용은 해당 출처의 원문을 참고하되, 실제 사업비 집행 시에는 부산형 앵커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

**국외출장·업무추진비·계약은 감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항목으로, 사업비 집행 시 규정 준수에 유의**

- 업무추진비 집행 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의 지출을 금지하며, 골프장 등 레저업종에서의 집행은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
-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절차 준수와 자체 계약사무규정의 적정성 사전 검토 철저
- 국외출장을 통한 지식·경험 공유를 위해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외유성 출장 방지 및 여비 산정기준 준수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19조 카드사용 및 제한 | |
|---|---|
| **유흥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위생업종** |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 **레저업종** |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 **사행업종** |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기타업종** |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부처별 주요 지적 사례

|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 *농림축산부 특정감사 사례* |
|---|---|
| **제한 업종 업체 이용** | • 2024년 그룹별 단합 활동 추진 비용으로 총 46개소에서 4,001,16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클린카드 제한업종인 "스크린골프장" 2개소에서 사용<br>• 일부 부서에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내부 직원 식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이를 집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직원 사기진작 및 소통'으로 기록 |
| **처분 조치** | • 2024년 그룹별 단합 활동 추진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인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회수조치 요구 |

| 계약사무규정 운영 부적정 | *농림축산부 특정감사 사례* |
|---|---|
| **지체상금 규정 불이행** | •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지체상금률은 공사 및 물품 제조·구매 0.05%,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0.125% 등으로 규정하고, 수의계약은'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으로 정함.<br>• 자체 「계약사무규정」에 지체상금률을 일괄 0.3%로 규정하고, '3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여 지체상금률 부과 또는 수의계약 체결 |
| **처분 조치** |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체상금률 부과,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도록 「계약사무규정」개정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 국외 연수 선발 기준 미비 | *해양수산부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
|---|---|
| **교육 선발 기준 미비** | • OO연합회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산업 경영인 대상으로 해외연수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행<br>•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br>• 하지만, 사업계획에 따른 별도의 선발 기준과 절차 없이 각 OO연합회의 추천 대상자(간부급)를 선정하고 있으며 중복참석한 인원도 00명으로 확인 |
| **처분 조치** | •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외연수 교육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개선 요구 |

| 국외출장 보고서 미흡 ① | *금융위원회 국외출장 특정감사* |
|---|---|
| **출장 보고서 미제출** | • OO은행은 사후통제장치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웹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br>•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 감사 등의 사후통제가 부재한 측면 확인 |
| **처분 조치** | • 국외출장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지침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전·사후통제 제도를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통보 |

| 국외출장 보고서 미흡 ② | *금융위원회 국외출장 특정감사* |
|---|---|
| **출장 보고서 부실** | • 국외출장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출장과 달리 필요 최소 한도로 실시하고, 사전 출장계획 및 사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br>• 또한, 제출된 출장결과보고서는 공개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 국외출장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임<br>• OO 기관의 보고서의 내용은 일정 요약을 주된 내용으로 1~2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는 등 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로 보기 어려움을 적발 |
| **처분 조치** | •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세 보고서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 주의 통보 |

| 국외출장 보고서 미흡 ③ | *청주교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
|---|---|
| **출장 보고서 부실 및 외유성 출장** | • 청주교육대학교는 2022~2023년 기간 동안 OO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1명의 교원을 선발하여 1인당 최대 2,500천원 범위 내에서 연수비용 합계 26,939천원을 지원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br>• 종합감사 기간동안 교원 단기국외연수 현황을 확인 결과,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모두 사전 협의된 공식 방문기관은 없었고, 연수 일정 대부분도 해외 유명 관광지 방문인 것으로 확인<br>• 결과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5줄~11줄)하며, 관광지 방문 지역을 단순 정리후 보고서 제출 |
| **처분 조치**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 단기 국외 연수 등 공무 국외출장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관경고 및 통보 조치 |

| 국외출장 여비 정산 부적정 ① | *수치모델링센터 종합감사 결과* |
|---|---|
| **출장 증빙 서류 미비** | •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는 국외출장 항공료 정산은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전정산을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가능하다고 명시<br>• 개인카드 결제 후 출장전 선지급(40건/57.1%) 건은 사후정산 원칙에 위반되며, 또한 출장 전 선지급 40건에 대해서는 출장 후 실제 탑승권이 증빙서류로 존재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것을 확인 |
| **처분 조치** | • 국외출장 항공료 정산을 수행하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기관에 주의 촉구 |

| 국외출장 여비 정산 부적정 ②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보고서* |
|---|---|
| **여비 정산 부적정** | • 간접보조사업자가 국외출장 항공권 구입비로 3,300,000원을 정산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항공권 등급을 변경하여 1,592,300원만 집행하고 차액 1,707,700원을 미반납함<br>• OO연구원은 정산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항공권 변경에 따른 실제 집행금액 및 차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관리·감독 미흡 |
| **처분 조치** | • 국외출장 항공권 구입비 차액 1,707,700원 환수·반납 방안 마련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정산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요구 (통보) |

## 2-2 조달청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1인 견적 허용 기준 등 주요 계약절차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안내
계약금액 조정, 사후정산 및 설계변경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판단기준 참고

**(유권해석 사례) 「국가계약법」 관련 수의계약, 입찰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정리**

- 조달청의 수의계약 체결 요건, 견적서 제출 기준 및 재공고입찰 후 계약 체결 등 주요 계약절차 관련 유권해석 사례 수록
- 확정계약의 사후정산, 선금 지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 등 계약 이행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수록하였으므로 계약 업무수행 시 기준 숙지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입찰 유찰, 1인 견적 허용 요건 및 계약금액 변경 등 상황별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소액수의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수의계약 한도 초과 조정은 불가하므로 유의

**수의계약 유권해석 사례 ①** *공개번호: 2009100032*

| | |
|---|---|
| **제목** | •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체결 |
| **질의내용** | •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하여 입찰자 A, B가 참여하였으나, 입찰자 A만 규격적격자로 확정되었으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재공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찰자 A, B가 참여하여 입찰자 A만 규격적격자가 되고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br>•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규격적격자 A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br>•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입찰 참가자격 등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조건에 적합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규격적격자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 할 것입니다.<br>•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조건들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실시하거나, 기존의 입찰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재차 재공고 입찰 또는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br>•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유찰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수의계약 유권해석 사례 ② | 공개번호: 2009100015 |
|---|---|
| **제목** |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
| **질의내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br>•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br>• 동조 동호 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br>• 위 문구 중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사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 **회신 내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서는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해당 조문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뿐 아니라 시설공사 등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br>• 따라서, 귀 질의 여성기업과 공사 수의계약도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수의계약 유권해석 사례 ③ | 공개번호: 2009100037 |
|---|---|
| **제목** | • 소액 견적입찰에서 계약 포기한 업체에 대한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시 기준일(기산일) |
| **질의내용** | • 국가계약법에 따라 소액 수의견적입찰 공고 후 개찰했습니다. 그런데 투찰업체가 1순위부터 계속 계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br>• 계약포기 업체는 3개월 수의계약배제 규정에서 배제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br>• 1. 계약포기업체 일괄적으로 개찰일, 2. 업체가 실제로 포기의사를 통보하거나 포기서류를 준 날짜 |
| **회신 내용** |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제7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br>• 배제 기준일(기산일)은 상기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찰일 이후 포기 의사 통보 또는 포기서를 제출한 일자 등 실제 계약포기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수의계약 유권해석 사례 ④ | 공개번호: 2009100028 |
|---|---|
| 제목 | •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 여성기업 등과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
| 질의내용 | •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2~5천만원)이 가능하나, 공사계약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2~5천만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 회신 내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몇 명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br>•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서는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하 '여성기업 등'이라고 한다)"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여성기업 등은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같은 조의 다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문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br>•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도 여성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수의계약 유권해석 사례 ⑤ | 공개번호: 2009100043 |
|---|---|
| 제목 | • 소액수의계약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
| 질의내용 | • 추정가격 2천만원 수의계약 후 물량 증가로 설계 변경시 수의계약 금액 초과 가능 여부 |
| 회신 내용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당초 수의계약 사유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법령을 사후적으로 위배하게 되는 우려가 있으며,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수의계약이 곤란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업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br>•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목 2)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목 3)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수의계약 유권해석 사례 ⑥ | 공개번호: 2009100022 |
|---|---|
| **제목** |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 |
| **질의내용** |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 재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으로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br>• 이때, 입찰자 1인의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하는지? |
| **회신 내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또한,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술능력평가 85% 이상 등)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같은 영 제43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의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와 확정계약의 사후정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 요구

- 입찰 전 상호·대표자 변경등록 절차를 준수하고, 별도 정산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확정계약은 실제 비용 감소를 이유로 한 감액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

| 입찰 변경 유권해석 사례 | 공개번호: 2009100031 |
|---|---|
| 제목 | • 상호변경으로 인한 입찰무효 여부 |
| 질의내용 | • 입찰 전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전 상호로 입찰참가를 할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나요? |
| 회신 내용 |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4항은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의3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따라서, 입찰 전에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 다만,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자 등기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의 유무효 여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4항,「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감액 정산 유권해석 사례 | 공개번호: 2009100025 |
|---|---|
| 제목 | •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정산 가능 여부 |
| 질의내용 | • 입찰을 통해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용역계약에서 과업이 완료된 이후,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접경비(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에 대해서 감액정산이 가능한가요?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낙찰된 총금액으로 계약을 이행 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 대가를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다른 관련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br>• 따라서, 확정계약인 경우에 사후정산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한정되므로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의 사후정산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이외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br>•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 (공사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 이행 요구

- 설계변경 시 당초 계약단가 적용,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 및 사전 통지 등 관련 절차 준수 철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및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잔여 계약이행요건과 계약해지·제재 여부 등 검토 필요

|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① | 공개번호: 1809280010 |
|---|---|
| **제목** | •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삭제하였다가 다시 복원될 경우 계약금액 적용방법 |
| **질의내용** |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삭제하였다가 다시 복원할 경우 신규비목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요?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이나, 당초 물량내역서에 있던 품목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

|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② | 공개번호: 2009100017 |
|---|---|
| **제목** | •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 |
| **질의내용**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하고 A사의 전체 잔존 과업을 B사에게 100% 이전이 가능한지?<br>• 또한, A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정당한 이유 없이 체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거 부정당제재를 해야 하는지?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br>• 또한, 발주기관은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③ | 공개번호: 1809280004 |
|---|---|
| 제목 | •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 관련 |
| 질의내용 |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 회신 내용 | •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

|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④ | 공개번호: 1809280002 |
|---|---|
| 제목 | •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조치사항 |
| 질의내용 | •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름을 발견하였을 때 계약상대자가 조치할 사항은?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실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견되었다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동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⑤ | 공개번호: 2009100038 |
|---|---|
| 제목 | • 계약 이후 입찰참가자격 소멸시 부정당제재 여부 |
| 질의내용 | • 계약체결 완료 후 아직 착공 이전이나 업체가 기술사 미확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였던 설계업종이 소멸되었습니다.<br>•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br>•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br>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br>•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76조 및 별표 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br>•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업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계약체결한 건으로 계약이후 해당 면허 소멸과 계약상대자의 용역계약 이행의 불가능 등 동의서를 제출받아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검토는 가능할 것이며, 시행령 제51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도 가능할 것입니다.<br>• 또한,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13.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로 부정당 제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br>•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부정당 제재 근거 및 사유 등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⑥ | 공개번호: 1809280001 |
|---|---|
| **제목** | • 공사계약 설계변경 사유 관련 |
| **질의내용** | •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사유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아래 참고)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br>•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br>• 2.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br>•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br>•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⑦ | 공개번호: 2009100021 |
|---|---|
| **제목** |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
| **질의내용**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조정신청일로 인정되나요?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요건(기간, 조정률)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의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합니다.<br>• 또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3항, 「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 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br>•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의 조정요건(기간, 조정률)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 신청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br>※ 참고로,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기타 계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용역 추가 과업 발생 시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적정성 검토 필요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선금공제액 반영 및 추가 과업 발생 시 계약의 목적·본질 등을 고려한 변경계약 또는 신규 발주 여부 검토 필요
- 물품구매계약의 분할납품 시 납품 완료·인수분 및 납기 미도래분을 제외한 지체상금 산정과 계약금액의 30% 상한 기준 적용에 유의

**선급금 유권해석 사례** — ***공개번호: 2009100018***

| | |
|---|---|
| **제목**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
| **질의내용**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b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br>• 귀 질의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용역 추가 과업 유권해석 사례** — ***공개번호: 1809280010***

| | |
|---|---|
| **제목** | • 추가 과업이 발생하는 용역계약은 변경 계약하는지? |
| **질의내용** | •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 발주해야 하나요? |
| **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 또는 신규 발주가 가능합니다.<br>• 이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증가되는 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물품구매 계약 유권해석 사례 | *공개번호: 2009100008* |
|---|---|
| **제목** | • 지체상금 한도 |
| **질의내용** | •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br>•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
| **회신 내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br>• 동 규정에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br>• 이는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br>• 동 지체상금 상한액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해 볼때 귀 질의의 경우 납기 미도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 Ⅲ

# 국고보조금 불인정 및 부정수급 예방 가이드

1.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원칙
1-1.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1-2.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과정별 착안 사항

2.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점검사항
2-1. 국고보조금 집행 항목별 점검 사항

# 1.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원칙

- 집행 과정에서 점검해야 하는 주요 체크리스트
- 불인정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 공유
-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기본원칙 및 공통된 관리 절차 준수
- 집행 항목 별 주요 관리내용 및 확인 사항 점검

## 1-1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 관리

- 사업비 집행 실수가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문제 방지
- 집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 부담과 판단 오류 감소
- 실무자가 점검할 수 있는 핵심수칙 형태로 제시하여 사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
-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집행 전·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핵심 관리방향** | 집행 전 적정성 확인, 집행 후 증빙 및 결과 확인

| 구분 | 점검사항 |
|---|---|
| 집행 전 | ☐ 사업계획 반영 여부<br>☐ 사업목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br>☐ 적정 비목 및 예산변경 승인 여부<br>☐ 사전 내부품의 및 결재 여부<br>☐ 계약·구매 절차의 적정성<br>☐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확인 |
| 집행 중 | ☐ 실제 거래 및 수행 여부<br>☐ 계약내용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br>☐ 동일 업체 분할집행 여부<br>☐ 적정한 지급방법 및 계좌 확인 |
| 집행 후 | ☐ 검수조서·결과보고서 확보<br>☐ 회의록·참석자 서명 등 증빙 확보<br>☐ 회계장부와 e나라도움 내역 일치<br>☐ 자산등록 및 사후관리 여부<br>☐ 집행 증빙자료 보관 여부 |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 핵심수칙

| 번호 | 핵심 수칙 | 관리 키워드 |
|---|---|---|
| 1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먼저 확인한다. | 목적 적합성 |
| 2 | 사업계획에 없는 지출은 임의로 집행하지 않는다. | 계획 준수 |
| 3 |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승인 후 집행한다. | 사전 승인 |
| 4 | 사전 내부품의 없이 카드결제부터 하지 않는다. | 사전 결재 |
| 5 | 회의비는 회의목적·참석자·내용·금액을 명확히 남긴다. | 회의 증빙 |
| 6 | 출장비는 출장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을 증빙한다. | 출장 입증 |
| 7 | 인건비·전문가활용비·강사료는 지급근거와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 지급 적정성 |
| 8 | 기자재는 구매뿐 아니라 검수·설치·자산등록까지 관리한다. | 자산 관리 |
| 9 | 용역·공사는 계약·결과물·검수자료를 반드시 확보한다. | 계약 이행 |
| 10 | 집행 즉시 증빙을 정리하여 정산 가능한 상태로 관리한다. | 증빙 보관 |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공통 집행관리 절차

**모든 사업비 집행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 절차**

사업목적 및 필요성 검토 → 예산 비목 및 집행기준 확인 → 사전 품의·내부결재 및 승인 → 적정 계약·구매·지출 실행 → 실제 수행·납품·검수 확인 → 증빙자료 확보 및 회계처리 → e나라도움 등록·정산 및 사후관리

## 1-2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과정별 착안 사항

###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

- **(사업목적 적합성 확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편성·집행
- **(구체적인 예산 편성)** 예비비, 잡비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포괄적 예산 편성 지양, 비목(항목)별 산출 근거와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필요경비 편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기관의 일반 운영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편성·집행 불가
- **(사업계획 준수)** 사업계획 및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절차 진행

###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관리

- **(전용 계좌 개설)** 기관 자체 자금과 구분하여 사업별 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타 사업 계좌와 혼용 사용 금지
- **(전용 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유흥·사행·레저 등 제한 업종 사용 불가
- **(사용내역 관리)**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등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 건별 관리
- **(부적정 시간대 사용 유의)** 공휴일·심야 등 업무시간 외 사용은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 관련성과 사용 사유를 명확히 소명 필요
- **(실제 거래처에 직접 지급)** 집행내역과 실제 거래처를 일치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계좌로 자금을 인출한 후 별도 정산하는 방식 금지

### 지출결의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

- **(사전 품의 및 결재)** 지출 전 사전품의서 작성 및 내부 결재 완료 후 집행
- **(집행내역 일치)** 보조금 계좌, 회계장부, e나라도움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및 카드 영수증 등의 금액·일자·거래처 일치 필요
- **(실제 거래 확인)** 물품·용역 등의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명세서·납품서·검수조서·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확보
- **(자금 일괄 인출 금지)** 국비·지방비·자부담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회계처리 금지

### 입찰·계약 절차의 적정성 확보

- **(계약 관련 규정 준수)** 물품·용역·공사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방법과 절차 준수
- **(나라장터 이용)** 계약금액과 계약 유형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계약 또는 조달청 중앙조달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행
- **(수의계약 사유 명확화)** 수의계약은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수의계약 사유서와 비교견적 등 관련 자료 구비 철저
- **(분할계약 금지)** 나라장터 이용이나 경쟁입찰 등 계약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금액 쪼개기 및 분할계약 금지
- **(특정 업체와의 부적정 거래 방지)** 임직원 및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 여부 확인,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이나 규격 설정 금지
- **(계약내용과 실제 이행 확인)**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납품·검수·준공 등 완료 절차 후 대금 지급

###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 관리

- **(사업기간 준수)**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집행한 일반 경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출하는 행위 금지
- **(계약 및 지출 시점 확인)** 사업기간 내 계약·수행·검수·지출 등 관련 절차 및 증빙서류 구비의 적정성 확인 필요
- **(사전 변경 승인)** 사업내용·예산 비목·집행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 전에 상위 보조사업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 이행 필요
- **(사후 승인 지양)** 기집행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받는 방식 금지 : 부정수급 또는 부적정 집행으로 분류 가능

# 2. 국고보조금 집행 주요 점검사항

## 2-1 국고보조금 집행 항목별 점검 사항

### 회의비 · 업무추진비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회의목적** | 앵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 회의계획 및 사전품의 여부 |
| **참석자** | 참석자 명단 및 실제 참석 여부 확인 | 참석자 서명부 |
| **회의내용** | 논의사항 및 회의 결과 구체적 작성 | 회의록 (자필서명 및 회의금액 기재) |
| **집행금액** | 참석인원·금액·사용내역 명확히 기재 | 카드전표·영수증 |
| **회의 실제성** | 실제 회의 개최 여부 확인 | 회의사진(권장) |
| **집행방식** | 일괄기안 및 동일 업체 분할결제 방지 | 건별 지출결의서 |

### 출장비 및 국외출장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출장계획** | 사업 관련성 및 출장 필요성 검토 | 항공권 및 출입국 확인자료 |
| **사전승인** | 출장 전 내부결재 | 출장경비 적정성 (숙박·교통 영수증) |
| **출장수행** | 실제 출장 및 이동 사실 확인 | 출장목적 이행 (행사·학술대회 참가 증빙) |
| **활동확인** | 행사·회의·학술활동 참여 확인 | 실제 수행활동 (발표자료 및 활동자료) |
| **결과관리** | 출장성과 및 사업 기여도 작성 |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성과 및 사업 연관성) |

### 인건비 · 전문가활용비 · 강사료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정규직 인건비** | 지급대상 및 사업 참여 근거 확인 | 참여인력 현황표·급여자료 |
| **계약직 인건비** | 계약기간 및 업무내용 확인 | 근로계약서·업무자료 |
| **단기 보조인력** | 근무기간 및 실제 근무 여부 확인 | 근무확인자료·지급내역 |
|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격 및 자문 수행 여부 확인 | 자문결과·회의록·지급증빙 |
| **강사료** | 강의 수행 및 지급기준 확인 | 강의자료·참석확인서·지급내역 |

### 학생 장학금・활동비・학생인건비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장학금** | 사업계획상 지급 근거 확인 | 생활비 보조성 지급 여부 |
| **학생 지원금 (포상금)** |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성과에 따른 지급 (추후 부산시 공통지침 마련 예정) | 참여내역 및 활동실적, 지급기준 및 선정근거 |
| **학생인건비** | 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 참여율·근무 및 지급내역 |
| **학생 회의비** | 사전 품의 내용 및 회의목적 확인 | 참석자 구성 (학생만으로 구성된 회의비 집행불가) |

### 물품・기자재・연구시설 및 중요재산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구매 필요성** | 사업 관련성 및 구매 필요성 검토 | 구매계획서 |
| **심의·구매절차** | 장비심의 및 구매절차(입찰 등) 이행 | 심의자료·구매서류 |
| **계약·구매** | 계약 및 납품내역 확인 | 계약서·거래명세서 |
| **검수·설치** | 실제 납품·설치 여부 확인 | 검수조서·설치사진 |
| **자산등록** | 자산번호·스티커·대장 관리 | 자산관리대장 |

### 용역・계약 및 시설공사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계약 전** | 사업 관련성·계약 필요성·산출근거 | 사업계획·견적서(비교견적 포함) |
| **계약 절차** | 입찰·수의계약 등 적정 절차 준수 | 입찰서류·수의계약 사유서 (동일 업체 분할계약·분할결제 방지) |
| **계약 체결** | 계약내용·기간·금액 확인 | 계약서·과업지시서 (사업기간 외 용역·공사 선집행 금지) |
| **사업 수행** | 실제 용역·공사 수행 여부 | 수행자료·중간보고 |
| **결과 확인** | 결과물 및 계약내용 일치 여부 | 결과보고서·검수조서 |
| **대금 지급** | 계약 및 검수 결과에 따른 지급 | 지출결의서·지급증빙 (선금 지급 시 관련 법령 및 증빙요건 준수) |

## 연구개발과제 (산학연 공동 R&D 등)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연구계획** | 연구목표 및 세부 예산계획 준수 | 연구계획서 (세부 예산계획) |
| **연구인력**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관리 | 연구책임자 자격 및 참여인력 현황<br>(인건비 지급대상 참여율 관리 철저) |
| **대응자금** | 참여기업 부담금 별도 관리 | 입금·집행 증빙 |
| **연구비** | 연구개발비와 일반 사업비 구분 | 연구비 집행내역 (국연법 준용),<br>연구수당 및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확인 |
| **연구성과** | 성과 귀속 및 사사표기 관리 | 논문·특허·기술이전 자료 |

## 홍보물, 기념품 등

| 항목 | 확인 사항 | 관리 내용 |
|---|---|---|
| **홍보물 제작** | 사업 관련성 및 제작 필요성 | 제작계획서 |
| **홍보물 표기** | 사업명·로고 등 사사표기 | 제작물 시안·사진 |
| **배포관리** | 제작 수량 및 실제 배포 확인 | 배포대장·불출대장 |

본 사례집은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
및 부처별 감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발췌·재편집하였으며,
기획예산처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례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부정수급은 대부분 일부 절차의 누락과 사소한 관행에서 비롯되며,
사전 확인과 철저한 증빙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투명한 사업비 집행이 사업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사례집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비 집행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앵커센터